

제 1864 호

1987. 6. 15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영 보  
 편집인: 영 보 관 김 성  
 전 화: 731-6111~3  
 서울특별시 종합합간실  
 전 화: 735-3537

신	경	공	보	관	영	보
합	의	사	의	사	의	사
제	의	의	의	의	의	의

# 시 보

## 차 례

- ◎ 공 문 서 열
  - 소송수당유공공무원포상대상자추천..... 3
- ◎ 규 칙
  - 제 2182 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개정규칙..... 4
- ◎ 교 시
  - 제 41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8
- ◎ 구 고 시
  - 시책연구제 2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8

(이면계속)

영									
보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 제 2 호 : 선박운항허가.....	9
◎ 공 고	
제 383 호 : 제 2 종건거공사업면허영업금지.....	9
◎ 구 공 고	
성북구 제 23 호 : 특정업사용기자재시공업지권업대지경획소.....	10
강서구 제 52 호 : 공인신호.....	10
◎ 사 령	

공 문 시 행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제로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법무 23289-911

(307)

1987.6.15.

수 신 : 수선처참조

제 목 : 소송수행유공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제1회)

1.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거 87년도제1회 소송수행유공  
장분 표창하고자 하니 기일엄수 추천할 것.

가. 유공표창대상자

1)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받아 사법감을 가지고  
성실의 수행하여 우리시 행정, 재정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공무원

2) 전1항 외의 소송담당자(변호사를 위임한 경우)로 저명한  
아 자료수집 작성등 현저한 공로가 있어 우리시에 승소의 결과를 가져온  
공무원 및 소송업무물 성실히 수행한 소송담당공무원

나. 추천기일: 1987.6.25 까지 (단, 기일후 도착된 것은 제외함)

다. 제외대상:

- 1) 공, 사생활을 병하여 용결이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자
- 2) 추천일 기준 공무원 근무3년, 사근속2년미달자
- 3) 동일직급에서 2년내 시장이상 표창 수상자
- 4) 징계처분을 받고 2년 미경과자
- 5) 현직급 임용, 현부서 근무 단기자
- 6) 인사위원회의 경고, 청색경고처분을 받은후 1년 미경과자
- 7) 훈계, 경고처분후 6월 미경과자
- 8) 소송업무 담당 6월미만자

우수장안이나 특출한 공적저양자는 근무기간등을 예외적으로

처용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 1) 공적조사 3부.
- 2) 공적요약서 3부.
- 3) 자제 공적심사 의결서 사본2부. (자제 공적심사위원회 구

심부서에 한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기획관리실장 권경

수신처: 서과 01-72, 서구 1-17, 서서 01-24, 서소 01-11, 서사 01-59, 서보 1-12.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6.15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④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 2182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인사기록카드작성 및  
변경)”을“(인사기록카드작성)”  
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공무원이 신규입용, 승진, 전직,  
전보, 감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결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  
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  
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  
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  
란에 별표1의2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승진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주서로 기록하고, 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  
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당  
사무

란에 담당업무와 전보제한 기간 또  
는 각점부서 근무기간을 기록하  
야 한다.

1. 법제 27 조제 4항 및 영제 28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및  
및 전직이 금지된 자
  2. 영제 27 조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금지된 자
  3. 영제 34 조제 4항 및 지방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  
상 승진이 금지된 자
  4. 제 51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제한의 적용을 받은 공무  
원증 본청의 행정규상담당실근무  
지 구청의 기획감사과 감사제 및  
조사제근무자 구청의 밀방위과 방  
사제근무자 및 동사무소의 병사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
  5. 제 87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은 공무원중 본청의 행  
정법규상담당실 및 구청의 기획  
감사과 사회지도계 근무자
- ③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에  
인사기록을 변경(정정; 추가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사장(인사기록카드정본 관리책임자 참조)에게 공무원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제

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사기록 변경기록 여부를 검토 결정할후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정리하고 인사기록카드 부본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의 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시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징계: 7년  
나. 장봉: 5년  
다. 견제: 3년

2. 소정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②시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정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 1항및제 2항의 규정에서 외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서 의한다. 다만, 제 1항제 2호 또는 제 2항제 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시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조작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6 조제 5항중 "서울시립대학"을 "서울시립대학교"로 "학상"을 "총장"으로 한다.

제 70 조제 3항중 제 3호를 삭제한다.  
제 87 조제 1항제 1호중 "मुख지갑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 나지)" 다음에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삽입하고, 동조동항제 2호중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올림픽준비단"으로, "자동차관리사업소 관리과, 등주과"을 "자동차관리사업소 (지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각종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중 제 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7호 다음에 제 18호 및 제 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원증명서 1통	○	○	○	○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8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9	신원진술서 3통(전직하였을 경우 4통) 및 별제사유가 기재된 초 적등본 1통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13]의 제목중 "서울시립대학졸업자"를 "서울시립대학교졸업자"로 한다.

[별표 22] 행정자와 확인자(5, 6급 일반직, 연구·지도 및 의료직)중 3급이상 사업소장과 시립대학관 및 비교관의 제 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급이상 사업소	부	제 사 업 소	5, 6 급	부	장	사업소장	
	과	제 사 업 소	5, 6 급	과	장	사업소장	
	한강관리 사업소	본	소	5, 6 급	과	장	사업소장
		4급기관장 하수처리장		5, 6 급	하수처리장장		사업소장
		5급기관장 하수처리장		5, 6 급	본소주무과장		사업소장
서울시립대학교			5, 6 급	사 무 국 장		총 장	

1. 본청주관 국장이 확인자인 사업소소속 행정직 6급에 대하여는, 본청과 사업소를,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확인자인 한강관리사업소소속 전직급에 대하여는 본소와 하수처리장을 각각 구분하여 본포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23] 행정자와 확인자(7급이하 및 기능직)중 3급이상 사업소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교관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급 이 상 사 업 소	서울시립대학교		7 급이하 기 능 직	주무과장	사무국장
	종합건설본부		7 급이하 기 능 직	부 장	차 장
	공무원교육원		7 급이하 기 능 직	과 장	교수부장
	한 강 관 리 사 업 소	본 소	7 급이하 기 능 직	과외 주무계장	과 장
		4 급기관장 하수처리장	7 급이하 기 능 직	과 장	하수처리장장
		5 급기관장 하수처리장	7 급이하 기 능 직	하수처리장장	본소주무과장
	기타 사업소		7 급이하 기 능 직	부장,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2. 본청주관 과장이 확인자인 사업소 소속 직원과 한강관리사업소 본소 주무과장이 확인자인 5급 기관장 하수처리장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본청과 사업소 및 본소와 하수처리장을 각각 구분하여 분포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기준) 시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징계등 처분기록을 제1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③ (근무경력 가정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 87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정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25일부터, 제 87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의 의한 올림직준비단(올림직준비단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정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의 2)

○ ○ 규정 (법령의 명칭) 제 ○ 조  
 제 ○ 항의 규정의 의하여 ○ ○ ○ ○ 년  
 ○ 월 ○ 일부터 ○ ○ ○ ○ 년 ○ 월 ○ 일까지  
 승진 (결보, 전직) 이 금지된 자임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1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제 370 호 ('87.5.29) 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조서

1987. 6. 15

서울특별시장

(단위:㎡)

구분	등급	유별	목원	연장	기	종	비고
기정	소로	3	6-10	320	급호1가동601	급호1가동272-1	
변경		3	6	320			일부구간 목원축소

나. 결정도면: 별첨 (생략)

**구 고 시**

◎서대문구고시제 22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시행허가

1. 서대문구 공고 제 123 호 (87.5.14)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공람공고한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26 호 (86.12.18) 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의 권한취일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상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다.

보인다.

1987. 6. 15

서대문구청장

※ 허가 내용

- 가. 사업시행자: 서대문구연회동55-1 일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서울외국인학교 교사증축
- 다.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면적: 54,803 ㎡
- 건물연면적: 기존 19,760.24 ㎡  
 증합 2,756.8 ㎡ 계 22,517.04 ㎡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

라. 사업시행과: 서대문구연회동55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치재단 대표이사 고 일 선



<p>마. 사업의 착수에정일: 87. 6.                  바. 사업의 준공예정일: 88.12.30                  사. 수용알트지: 없음.                  아. 허가도서: 별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업소고시</b></p>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2 호                  선박운항허가</p>	<p>한강구역내 선박(요트)영업에 대하여                  허친법제 25조 제 1항 규정내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동법 제 25 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에 의하                  여 다음과같이 이공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년 6월                  한강관리사업소장</p>
--	---

○ 선박운항 허가내용

결용수 허가자	결 용 위 치	결 용 목 적	결 용 내 역
(주) 범한여행 장 명 진	강동구 암사 2동 614번지 앞 하천	요트영업을 위한 선박 운항	· MJ-7 : 3척 · MJ-13 : 2척 · MJ-16 : 5척 · MJ-18 : 5척 · MJ-19 : 6척

○ 허가기간: 87. 6. 11-87. 11. 30

<p style="text-align: center;"><b>공 고</b></p> <p>◎서울특별시공고제 383 호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영업정지</p>	<p>전기공사업법 제 29조 제 3항 제 3호 규정                  에 의거 아래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통                  법 제 4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 6. 15.                  서울특별시장</p>
---	--



다 려

면허번호	업 채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비 고
제 554 호	영신건설	김언수	신사동 19-100	영업정지 2월 (87. 6. 15 - 87. 8. 14 )	전기공사업 제 7 조 위반 (거술자 비책용)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 <b>구 공 고</b> </div> <p>◎ <b>성북구공고제 23 호</b></p> <p>축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지정업체 지정해소</p> <p>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30조의 규정</p>	<p>에 의거 아래 축정열 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체에 대하여 지정 취소하였기 동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 6. 1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p>
--	---

차점번호	업 소 명	소 계	지	대표자	사	운	조치사항
성북 69호	부성설비	장위동 23	1-44	민병철	무단장소이전	취	소
성북 152호	범양철비공사	석관동 34	4-26	김경식	무단장소이전	취	소

<p>◎ <b>강서구공고제 52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공 인 신 조</p> <p>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장제 2동 민원본소의 민원사무용 직인 및</p>	<p>제인을 신고하였기 동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1. 사용개시일 : 1987. 7. 1 09:00</p> <p>2. 반인명 : 신장제 2동 민원사무전용 직인 및 제인 (분소용)</p> <p style="text-align: right;">1987. 6. 1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p>
---	--

인  명		
공인명	신장제 2동민원전용 직 인	신장제 2동민원사무전용 제 인 (분소용)

사 령

◎ 1987.6.15 일자      영재 184 호  
 전북남원군              김    영    권  
 삼동면사무소              김    영    권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전립을      영합.  
 지방행정주사보에      영합함.  
 장남구      근무를      영합.

◎ 1987.6.16 일자      영재 185 호  
 충    구                      김    수    일  
 지방보건의사  
 광주 보건의      근무를      영합

◎ 1987.6.16 일자      영재 187 호  
 편약구                      이    용    재  
 지방건축지원  
 보라포유원      부의      사무소  
 근무를      영합  
 중앙건설본부              최    진    복  
 지방건축지원  
 편약구      근무를      영합

◎ 1987.6.23 일자      영재 188 호  
 충청북도 음성군              정    한    덕  
 지방건축기사보  
 서울특별시 전립을      영합.  
 장남구      근무를      영합.

◎ 1987.6.15 일자      영재 189 호  
 연    임                      김    동    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편리공사      사장에      임함.